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강태원 의원외 6인

(강태원, 최미애, 최광옥, 권광택, 이영복, 김법기, 이규완)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7일
-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, 학예에 관한 의안도 소관 위원회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동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교육, 학예에 관한 의안도 해당 위원회 발의가 가능하도록 명시(안 제57조)
- 입법예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2조의2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(안 제17조, 제20조, 제37조, 제47조, 제55조, 제59조)

5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」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